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헌결정법률에 대한 개선입법 조치 관련〉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27호)

2025. 2.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 · 허성무 · 채현일 · 민형배 · 양부남 · 이개호
조인철 · 박지원 · 안도걸 · 황명선 · 박해철 · 강준현
문금주 · 오세희 · 박희승 · 황명선 · 박해철 · 강준현
박용갑 · 김 윤 · 장종태 · 전진숙 · 정일영 · 안태준
의원 (21인)

2. 제 안 일 : 2025. 1. 10.

3. 회 부 일 : 2025. 1. 13.

※ 의안번호 : 74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입법자인 국회에 지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종

국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일반 법률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입법지연 및 입법공백이 나타나는 문제가 반복됨.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공청회가 개최된 후 120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러는 것임(안 제58조의2 제4항·제5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u> <u>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청회가 개최된 후 120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u>

현행법 제58조의2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¹⁾(단순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²⁾ 등 변형결정 포함)과 관련한 위원회 심사제도를 규정하고

1)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법률심판”과 제68조제2항에 따른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들 심판에 있어서의 종국결정의 유형은 크게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으로 나눌 수 있고, 위헌결정은 다시 단순위헌결정과 변형된 위헌결정 유형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및 한정합헌결정으로 나누어진다. (허영, 「헌법소송법론」, p.202~205)

2) 헌법불합치결정은 실질적으로 단순위헌에 해당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상 태나 법률생활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권자에게 입법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단순위헌결정으로 즉시 실효시키는 대신 단순히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선언에 그치는 결정유형으로, 결정주문에서 해당 법률의 적용중지를 명하면서 입법자의 개선입법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유형, 해당법률의 잠정적용을 명하면서 입법자의 개선입법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허영, 「헌법소송법론」, p.261~262)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된 중국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도록 하고(제1항),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송부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하며(제2항),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제3항).

동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즉시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의 후속입법 지연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제20대국회 「국회법」 개정(2016.12.16.) 당시 도입된 것임³⁾.

그러나, 「형법」상 낙태죄 조항(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결정, 개정시한: 2020. 12.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2008헌가25, 헌법불합치 결정, 개정시한: 2010. 6. 30.) 등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경과한 위헌법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⁴⁾, 국회의 후속입법 지연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⁵⁾.

국회사무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단순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대상 법률(2025년 2월 5일 기준)은 총 35건으로 단순위헌 법률 18건,

3)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7., p.291. 및 국회운영위원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6.11.

4)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되, 그 형식적 존속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에게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있기까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헌적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개선된 신법의 적용을 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상태는 하루빨리 법 개정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불합치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한다”(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라고 판시하고 있음.

5) 법조신문, [기획] ‘헌법불합치’ 법령 8개, 입법기한 지나… 법조계 “입법공백,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2025.1.9.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5>)

연합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 “정부·국회 입법공백 핑계만”, 2024.9.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53390>)

헌법불합치 법률 17건이고, 이 중 7건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남⁶⁾.

[표-2] 단순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

(2025.2.5. 기준)

구 분	운영	법사	정무	교육	외통	국방	행안	농해	복지	환노	소 계
단순위헌	1	8	1	1	1		5		1		18
헌법불합치		7(3)	1			1(1)	3(3)	1	3	1	17 (7)

* ()는 개정시한 경과 건수

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5-1호, 2025.2.

위헌결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이 지연될 경우 입법 공백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비록 형식적인 자구 정리에 불과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이 개별 법률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오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제·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후 120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공론화와 심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의 신속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6)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위헌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2025.2.5. 기준)”을 참고

법률의 합헌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안별로 위헌결정의 유형과 결정주문·이유, 관련 제도·정책의 복잡성 등에 따라 후속 입법을 위한 심사 소요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심사기한(120일)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제·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청회 개최 필요성 및 심사의 긴급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⁷⁾.

셋째, 안 제58조의2제4항은 공청회 개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제6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공청회 개최 요건인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4조제1항⁸⁾의 개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⁹⁾.

7) 참고로, 현행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8) 「국회법」 제64조(공청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9) 현행법 제64조제1항 단서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고 하여 예외를 두고 있음. 같은 형식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안건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014

참고자료 위헌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2025.2.5. 기준)

(국회사무처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5-1호, 2025.2.12.)

가.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총 35건)

● 총 35건 중 위헌 18건, 헌법불합치 17건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계
위헌	1	8	1	1	1		5		1		18
헌법불합치		7(3)	1			1(1)	3(3)	1	3	1	17

* ()는 개정시한이 지난 법률

나. 개정대상 법률의 주요 내용

소관 위원회	결정 유형	법률명 및 조항	선고일자	주요 내용	개정안 심사결과
운영위	위헌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	2022. 1. 27. (2018헌마1162)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 알권리 침해	상임위계류 2건
법사위	위헌	국가보안법 제19조	1992. 4. 14. (90헌마82)	찬양·고무죄 등의 구속기간 연장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발의 없음
		국가보안법 제13조	2002. 11. 28. (2002헌가5)	찬양·고무죄 등의 재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발의 없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2019. 2. 28. (2016헌가13)	밀수입 예비행위에 대하여 본죄에 준하여 처벌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상임위계류 1건
		행정소송법 제43조	2022. 2. 24. (2020헌가1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 제한 - 평등원칙 위반	상임위계류 1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2022. 6. 30. (2014헌마760)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대상에서 제외 -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 위반	발의 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2023. 2. 23. (2021헌가9)	주거침입강제추행죄·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규정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상임위계류 1건

소관 위원회	결정 유형	법률명 및 조항	선고일자	주요 내용	개정안 심사경과
법사위	위헌	민법 제999조제2항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	2024. 6. 27. (2021헌마158 8)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 상속인이 된 자가 기존 공동상속인에 대 해 상속분가액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 의 제척기간 적용 - 재산권, 재판청구권 침해	상임위계류 1건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2024. 7. 18. (2021헌마460)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일률적으 로 법관의 임용 결정사유로 규정 - 공무담임권 침해	발의 없음
	헌법 불합치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2019. 4. 11. (2017헌마127)	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 처벌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개정시한(2020. 12. 31.) 지남	발의 없음
		보안관찰법 제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2021. 6. 24. (2017헌마479)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무기한의 변동신 고 의무 부과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개정시한(2023. 6. 30.) 지남	발의 없음
		민법 제815조제2호	2022. 10. 27. (2018헌마115)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 로 혼인 무효사유로 규정 - 혼인의 자유 침해 *개정시한(2024. 12. 31.) 지남	상임위계류 1건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	2023. 3. 23. (2020헌가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미규정 - 신체의 자유 침해 *개정시한(2025. 5. 31.)	상임위계류 2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 제2항	2023. 3. 23. (2021헌마975)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 방법 미규정 - 혼인의 출생자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침해 *개정시한(2025. 5. 31.)	상임위계류 2건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18조	2024. 4. 25. (2020헌가4등)	①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②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 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 - 재산권 침해 *개정시한(2025. 12. 31.)	상임위계류 4건
		형법 제328조제1항	2024. 6. 27. (2020헌마468등)	친족 간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개정시한(2025. 12. 31.)	상임위계류 13건

소관 위원회	결정 유형	법률명 및 조항	선고일자	주요 내용	개정안 심사경과
정무위	위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2022. 2. 24. (2020헌가5)	정보요구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요구 행위를 금지 및 처벌 -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상임위계류 2건
	헌법 불합 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2024. 7. 18. (2022헌가6)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등의 배수벌금형을 규정 하면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 한 벌금 상한액을 미규정 -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개정시한(2025. 12. 31.)	상임위계류 3건
교육위	위헌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8호, 제20조제1호, 제48조제2항제2호	2022. 9. 29. (2019헌마813)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 집 설치, 운영 및 근무를 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과 자격이 취소되면 10년 동안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함 -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발의 없음
외통위	위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	2023. 9. 26. (2020헌마172 4)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 표현의 자유 침해	상임위계류 14건
국방위	헌법 불합 치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제6호의4나목	2022. 11. 24. (2020헌마118 1)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를 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 - 공무담임권 침해 *개정시한(2024. 5. 31.) 지남	상임위계류 2건
행안위	위헌	정당법 제44조제1항제3호, 제41조제4항 중 제4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	2014. 1. 28. (2012헌마431)	군소정당 등록취소 및 정당 명칭 사용금지 -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상임위계류 1건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2항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2018. 8. 30. (2014헌바148)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미규정 -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상임위계류 3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2018. 8. 30. (2014헌바180)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간주 -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상임위계류 1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2020. 4. 23. (2018헌마551)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관여 및 가입 금지 -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침해	상임위계류 4건

소관 위원회	결정 유형	법률명 및 조항	선고일자	주요 내용	개정안 심사경과
행안위	위헌	공직선거법 제251조	2024. 6. 27. (2023헌바78)	공직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상임위계류 2건
	헌법 불합 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제1호	2009. 9. 24. (2008헌가25)	야간옥외집회 금지 - 집회의 자유 침해 *개정시한(2010. 6. 30.) 지남	상임위계류 4건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2014. 7. 24. (2009헌마256)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로 제한 - 국민투표권 침해 *개정시한(2015. 12. 31.) 지남	상임위계류 2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및 제23조제3호	2022. 12. 22. (2018헌바48)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 집회의 자유 침해 *개정시한(2024. 5. 31.) 지남	상임위계류 2건
			2023. 3. 23. (2021헌가1)	국회의장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 집회의 자유 침해 *개정시한(2024. 5. 31.) 지남	
농해수위	헌법 불합 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2024. 5. 30. (2021헌가3)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 업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 - 재산권 침해 *개정시한(2025. 12. 31.)	상임위계류 1건
복지위	위헌	식품위생법 제96조	2023. 3. 23. (2019헌바141)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포괄적인 직무 규정 위반 시 처벌 - 명확성 원칙 위반	발의 없음
	헌법 불합 치	약사법 제20조제1항	2002. 9. 19. (2000헌바84)	법인약국 개설 금지 -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침해 *개정시한(없음)	발의 없음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	2024. 6. 27. (2021헌가19)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급보류처분 규정을 두면서도 사정변경 시 지급보류처분의 취 소, 지연손해금 등 필요한 조치 미규정 - 재산권 침해 *개정시한(2025. 6. 30.)	대안 법사위계류
		의료법 제43조제1항	2025. 1. 23. (2021헌마886)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 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에 대해 미규정 - 평등권 침해 *개정시한(2025. 12. 31.)	발의 없음

소관 위원회	결정 유형	법률명 및 조항	선고일자	주요 내용	개정안 심사경과
환노위	헌법 불합 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2024. 8. 29. (2020헌마389등)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 미규정 － 환경권 침해 *개정시한(2026. 2. 28.)	발의 없음